

『2026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안산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안산시가 지원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안산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당해연도 기술도입 완료(또는 예정)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안산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산학연관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기술이전(도입)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기술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뢰성 검증 및 기술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안산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주관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접수기간 : '26. 6. 12(금) ~ 7. 9(목)
- 사업기간 : 협약일 ~ 4개월
- 지원내용 : 이전(도입)기술 기반 기술사업화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규모 : 총 4개사 내외

□ 지원대상 :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국내·외 산학연·관의 연구성과물(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2026.1.1 이후)하였거나 완료 예정(당해연도)인 기업으로, 이전 (도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당해연도(2026년)에 계약을 완료한 경우, 본 과제 협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기술료는 기술료 계상 소급적용 불가
- 안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하는 중소기업
 - 본 사업 선정 이후, 안산시 관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 선정을 취소함 (단, 본점 또는 공장등록 중 하나라도 안산시 소재 시, 선정 유효)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은 주관기업으로서, 기술이전을 받을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설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3.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첨단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AI 등 안산시 핵심 산업분야

□ 지원내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기술이전 비용	· 대학 및 공공연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이전료 · 과제 협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기술료는 소급적용 불가
상용화 및 사업화 소요 비용	·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재료비, 외주용역비, 시험분석비, 성능·규격 등 국내외 인증, 특허 등 · 기술영상제작, 전시회(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비용 등

- ※ 주관기업·공동개발기관에 영구 귀속될 수 있는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 기술이전료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주관기업→공동개발기관 전출 불가
- ※ 주관기업·공동개발기관은 참여인력 인건비 및 간접비 계상 불가
- ※ 사업 종료일까지 시제품 및 인증 등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4.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 지원절차

구분	일정	내용	주관
사업공고 및 접수	6.12. ~ 7.9.	사업공고 및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접수	신청기업→경기TP
↓			
서류검토	7월 2주차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경기TP→신청기업
↓			
선정심사	7월 3주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경기TP
↓			
협약체결	7월 4주차	선정결과 안내 및 협약체결	경기TP↔선정기업
↓			
사업비 교부	7월 4주차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업비 교부	선정기업→경기TP 경기TP→선정기업
↓			
사업수행	협약 체결일 ~ 4개월	중간점검 (협약체결 후 2개월 내외)	경기TP→선정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협약 종료일 ~ 2주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선정기업→경기TP
↓			
사후관리	지속	투자유치 및 사업화 연계지원	경기TP→선정기업

※ 접수율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선정기준

평가 항목	내용	점수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	- 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과제의 최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30
기술의 사업성	- 이전(도입) 대상기술의 우수성 및 진보성 - 이전(도입) 대상기술 기반 제품의 경쟁력	30
사업추진 실효성	- 기술이전(도입) 목적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 과업 수행기간내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20
경제적 효과	- 시장규모 및 매출액 창출 효과 - 사업결과의 활용 방안 및 경제적 기대효과	20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5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 선정방법 : 발표평가
- 선정기준 : 평균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보

5.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 계획서 각 1부
 - (기술이전 완료기업) 기술이전계약서 및 기술이전 중개 확인서(서식6) 각1부
 - (기술이전 예정기업) 기술이전 의향서(서식7)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발급)(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해야 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기업은 대표자 인감증명서)(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만 해당함)(사본) 1부

□ 문의처

소속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강휘호 대리	hhkang91@gtp.or.kr	031-500-3039

6.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사항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여 협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